

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
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유승용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8. 26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385호로 2024년 8월 12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불법촬영 등 범죄에 취약한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도록 예방하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용하는 구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정의(안 제2조)

나.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 8. 5. ~ 8. 9.)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공중화장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,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덜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는 “불법촬영”과 “안심스크린” 용어 정의 신설.
- 안 제5조는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 조항 신설.

○ 검토결과

- 2022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(불법촬영피해경험)에 따르면 불법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음. 아울러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거나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 대부분이었으며, 대처 행동이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음. 공중화장실은 대처하기 어려운 장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통계 자료 해석이 필요해 보임.

2022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(불법촬영 피해 경험)

(출처: 통계청 KOSIS, 여성가족부 조사)

| 특성별(1) | 특성별(2) | 응답자 수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| 전체 (%) | 여자 (%) |
| 발생장소(복수응답) | 백화점, 시장, 가게(상점) 등 상업건물이나 그 주변 | 13.3 | 20.2 |
| | 술집,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나 그 주변 | 15.2 | 16.1 |
| | 호텔, 여관 등 숙박업소나 그 주변 | 12.1 | 4.4 |
| | 공중 화장실, 민간 개방화장실 등이나 그 주변 | 5.3 | 8.1 |
| | 유원지, 공원, 등산로, 공터, 외부 체육시설 등이나 그 주변 | 3.7 | 5.5 |
| | 버스, 기차, 지하철, 택시, 항공기, 선박 등 교통시설 내부 | 19.8 | 30.1 |
| | 대중교통 정거장, 역 또는 대합실 등이나 그 주변 | 10.3 | 15.6 |
| 유포 두려움 여부 | 전혀 느끼지 않았다 | 9.8 | 2.2 |
| | 별로 느끼지 않았다 | 20.0 | 11.8 |
| | 약간 느꼈다 | 36.6 | 37.5 |
| | 매우 느꼈다 | 33.6 | 48.5 |
| 가해자 유형별(복수응답) | 전혀 모르는 사람 | 46.0 | 47.6 |
| | 행위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하지(파악하지) 못함 | 30.0 | 19.7 |
| 가해자 성별 | 남성 | 61.4 | 77.9 |
| | 여성 | 7.0 | - |
| | 잘 모름 | 31.6 | 22.1 |
| 대처 행동(복수응답) |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 | 57.0 | 36.2 |
| |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하고 행동의 중단을 요구했다 | 37.2 | 47.1 |
| | 친구, 가족 등 지인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| 9.9 | 14.6 |
| | 해당 매체의 고객센터 등에 상담,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 | 5.6 | 8.3 |
| | 경찰에 신고했다 | 20.7 | 30.8 |
| | 직장이나 학교 등 소속 기관에 상담하거나 신고 | 3.4 | 5.1 |

-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는 불법촬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확보 수단이 될 것이며, 성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. 한편, 서울시 자치구는 모든 자치구가 「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는 제정되어 있으나,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를 규정 해놓은 자치구는 4개 자치구뿐으로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규정함이 그 목적이기에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.

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

| | 자치구 | 조례명 |
|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강서구 |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|
| 2 | 구로구 |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|
| 3 | 도봉구 |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|
| 4 | 중구 |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|

참고 자료

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

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, 휴식시설,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8조를 준용한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1. 7. 20.>

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7. 20.>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7. 20.>

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]

제6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③법 제7조제3항·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23. 7. 11.>

별표 5의3. 대변기 칸막이(대변기 칸 출입문은 제외한다)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는 5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. 다만,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이용자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